

제안요청서

사업명	바이오헬스산업 분류기준 정립 및 활용성 제고 방안 마련
주관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4. 08.

담당	바이오헬스혁신본부 바이오헬스혁신기획단	팀장 박종숙	Tel : 043-713-8430
	산업통계팀	담당자 정주석	Tel : 043-713-8433

1. 사업명 : 바이오헬스산업 분류기준 정립 및 활용성 제고 방안 마련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바이오헬스산업은 차세대 혁신을 주도할 주요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급속한 진화에 따른 정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통계 생산 및 분석이 필수적임
- 따라서 바이오헬스산업 분야의 정확한 현황 파악과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명확한 분류기준에 의한 산업통계 작성이 필요한 상황임
 -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사업체의 주산업 기준으로 분류되어, 바이오헬스산업의 특징을 반영한 적실한 통계 산출이 제한
 - * 신기술을 활용, 복합 산업 영위 기업이 많으며, 유사산업(디지털헬스, 바이오 등) 간 구분 분류 어려움
- 정책적 필요에 따라 급증하는 통계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전·후방 산업을 연계 구성한 특수분류 제정 추진
 - * 기존 바이오헬스산업 실태조사에서 포괄하는 산업 분야 기준 첨단기술 결합 분야(디지털헬스, 의료데이터 등)를 포괄하여 범위 설정
- 바이오헬스산업을 국가 新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관련 산업 범위를 구체화하고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의 기준 정립
- 또한 개발된 특수분류를 활용하여 정책수립 및 관련 산업체의 의사결정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사업기간 : 계약일 ~ '24년 12월 13일까지

4. 사업예산 : 78,000,000원 (VAT 포함)

5. 사업추진체계

○ 추진 조직

- 총괄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업통계팀
- 세부 : 외부전문기관

○ 조직 및 역할

구분	소속기관	주요역할
총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업통계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총괄
세부	전문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헬스산업 범위 및 분류구조 체계 마련 • 바이오헬스산업 특수분류 개발 • 바이오헬스산업 특수분류 기준 모집단 구축 • 바이오헬스산업 특수분류 활용방안 마련

1. 사업 범위

- 바이오헬스산업 범위 및 분류구조 체계 마련
- 바이오헬스산업 특수분류 개발
- 바이오헬스산업 특수분류 기준 모집단 구축(시범조사 포함)
- 바이오헬스산업 특수분류 활용방안 마련

2. 사업 세부 내용

1) 바이오헬스산업 범위 및 분류구조 체계 마련

- (정의 및 범위 설정) 기존 바이오헬스산업 실태조사에서 포괄하는 산업 분야 기준, 첨단기술 결합 분야(디지털헬스, 의료데이터 등)를 포괄하여 범위 설정(부처협의, 전문가 자문 등)
- 기존 바이오헬스산업 분류체계 검토 후, 명확성·적합성·비교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계층구조(대분류·중분류·소분류 등) 작성, 전·후방산업에 대한 포괄범위 구성

< 디지털헬스 및 의료데이터 등 첨단기술 결합 분야 사례 >

- ▣ (의료기기 포함 사례 : 루닛) 시각 데이터를 활용한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의료용기기 제조업 및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주요 사업 영위(금융감독원 감사보고서 참고)
- ▣ (의료기기 제외 사례) ① (휴노) 교육심리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컨설팅 서비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금융감독원 감사보고서 참고), ② (비트컴퓨터) 의료정보사업, 디지털헬스케어 사업 및 IT교육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금융감독원 감사보고서 참고)

→ 한국표준산업분류 11차 기준 『정보통신업(J)』 포함*

* 정보통신업(J) - 출판업(58)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 -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2)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22)

< 바이오헬스산업 정의(바이오헬스산업 실태조사) >

- **(광의)** 생명공학 및 의·약학 기술에 기초하여 질병의 진단 치료 및 예방 등 인류의 건강증진과 유지를 위한 모든 의약품 등을 제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산업
- **(협의)** 바이오헬스산업 실태조사에 해당하는 협의의 정의는 광의의 범위 중 제약(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산업 및 식품 산업 중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산업을 대상으로 한정함

※ (참고) 현재 바이오헬스산업 분류구조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세분류	
기초(핵심) 바이오헬스산업	■ 제약산업	-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의약품 도매업 / 의약품 소매업 - 의약품 관련 회사본부	기존 바이오헬스산업 분류체계의 순서 또는 해당 산업분류가 바이오헬스산업 활동에 차지하는 중요성에 따라 소분류와 세분류로 구분	
	■ 의료기기산업	-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 제조업 - 의료기기 도매업 / 의료기기 소매업 - 의료기기 관련 회사본부		
	■ 화장품산업	- 화장품 제조업 / 화장품 도매업 / 화장품 소매업 - 화장품 관련 회사본부		
	■ 건강기능식품산업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 건강기능식품 도매업 / 건강기능식품 소매업 - 건강기능식품 관련 회사본부		
	■ 바이오헬스 관련 연구개발업			
	■ 의료서비스업	- 병원 / 의원 / 공중 보건 의료업 - 기타 보건업 /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부분 바이오헬스산업	■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서비스업	- 의료기기 수리업		
	■ 보건안전(보호) 산업	- 보건위생용품 및 위생의복 제조업 - 의약 안전 포장용품 제조업 - 식의약품 살균업 / 의약 관련 폐기물 처리업 - 환자용 차량 제조업 / 안전용품 제조업		
지원 바이오헬스산업	■ 바이오헬스 지원산업	- 바이오헬스산업 공공기관 - 바이오헬스산업 교육서비스업 - 바이오헬스산업 단체 -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국내외 단체		

2) 바이오헬스산업 특수분류 개발

- (정의서 및 연계표 작성) 대·중·소분류의 계층구조에서 확장하여 세부 분류의 명확한 해설(예시 포함) 작성,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연계 체계 마련
* 특수분류 제정 후 한국표준산업분류와의 연계 체계(1:1, 1:多, 多:1)를 연계표로 작성, 유사 통계 간 정합성 확보 및 비교 가능
- (전문가 협의체 운영) 바이오헬스산업 분류체계 개발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협의체 운영 및 유관기관 의견 수렴(3회 이상 회의 진행)

3) 바이오헬스산업 특수분류 기준 모집단 구축

- 바이오헬스산업 특수분류 기준 모집단 구축을 위한 시범조사* 수행
 - * 바이오헬스산업 특수분류의 타당성 및 적용 가능성 등 확인
 - 연계된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별로 랜덤하게 확률표본추출하여 각 사업체가 바이오헬스산업 사업체인지 확인*, 산업 분야별로 적격률 계산하여 모집단 규모 파악
 - * 사업체의 판별과정을 통한 조사모집단의 적합성 검증
 - ** 시범조사(해당 업종 출현율 조사)는 최소 3,000 표본 이상
 - 간략하게 바이오헬스산업에 해당되는지, 특수분류가 정교한지 알 수 있는 구조화된 설문 문항 설계, 산업별 비교가 용이하도록 함
- 특수분류(안)의 포괄범위와 일치하는 검토 및 특수분류(안) 보완
- 기존 바이오헬스산업 실태조사 모집단 기준으로 하되, 특수분류에 따른 모집단 구축 → 향후 시계열 유지를 위한 모집단 관리방안 마련
 - 모집단 대상이 되는 대상 출처에 따른 결과값 비교·분석
 - ※ 각 산업별 생산실적(식약처) 및 전국사업체조사(통계청) 기반 모집단 구성 시 출처별 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등 기초 통계 비교 분석

4) 바이오헬스산업 특수분류 활용방안 마련

- 현재 작성 중인 국가승인통계(제358004호)에 대해 이후 바이오헬스산업 특수분류를 적용하여 통계작성 가능하도록 활용방안 마련

5) 통계청 업무 지원

- 바이오헬스산업 특수분류체계 정립 관련 행정업무 전반
- 특수분류 개발 관련 자료 작성을 위한 조사 수행 및 산출물 정리

6) 보고서 등 산출물 제출

연번	결과물	형태	종
1	분류체계 정의서(해설 및 예시 등)	엑셀/보고서	1
2	분류체계 연계표	엑셀/보고서	1
3	최종보고서	보고서	1

- * 과업 종료 후 원자료(raw data) 필수 제출
- * 사업범위 및 과업내용, 산출물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

3. 세부 추진일정 관련 사항

○ 제안사는 세부 추진일정을 아래의 추진 내용을 포함하여 제시하도록 함

추진 내용	
○총괄 조사 계획 협의 및 추진계획서 제출	
○바이오헬스산업 특수분류체계 정립(전문가 워킹그룹 구성 및 실무회의 포함)	
○바이오헬스산업 통합모집단 구축 : 조사대상 명부 확정, 모집단 확정	
○표본설계 및 설문설계	
○바이오헬스산업 특수분류 개발을 위한 시범조사	조사 Setting
	면접원 OT
	실시실행 및 보고
○자료 입력 및 검증	
○보고서 작성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추가조사 및 분석(재조사) 등 조사 유지보수	
○최종 결과 보고서 수정 및 제출	

※ 사업범위 및 과업내용, 산출물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

1. 입찰 참가자격

-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기업·소상공인 제한경쟁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 기타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서에 따름

2. 입찰 및 낙찰방법

-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 공모를 통하여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 적용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근거
-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공동이행(공동계약) 방식 허용
- 낙찰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선정

※ 낙찰절차: 제안요청 공고→ 제안서 접수→ 제안서 평가→ 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실시→ 낙찰자선정 및 계약체결

3.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 평가위원회 구성
 - 진흥원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기술평가 수행

※ 평가위원회 위원: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3분의 2이상으로 구성

○ 평가기준: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 점수 + 가격평가 점수
-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기술+가격)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점수 상위업체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평가항목 가중치(배점)가 높은 항목의 고득점자 순

- 기술평가: 평가위원이 기술평가표(붙임1)로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 ※ 기술점수산출: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출(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 기술평가표(붙임1): 사업 특성상 진흥원이 작성한 평가표에 의거, 목적에 적합한 평가항목과 배점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한으로 유지

- 가격평가 : 계약예규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4.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방법

○ 협상적격자 선정: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기술평가 점수가 일정비율(85%): 종합평가점수 중 기술능력평가점수의 합이 68점 이상

- 협상순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가능
 - * 기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에 준함.

5. 계약 조건 및 기타사항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구성원 및 사업수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진흥원 사업담당자와 협의하고, 중요사항은 진흥원의 승인을 득해야 함

*중요사항: 과제책임자 또는 참여인력 변경, 제안내용 및 주요 추진일정의 변동 등

- 당해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산출물의 소유권(지식재산권 등)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목적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제56조에 따라 추후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추후 상호 협의)" 또한 과업 수행 중 습득한 정보, 자료, 인쇄물 등은 외부에 유출할 수 없으며,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6조 제2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진흥원과 협의하여야 함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②계약상대자는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해당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금전의 지급

- 선급금은 착수보고서 제출 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규정에 의하여 지급함.
- 잔금은 동 사업 완료 보고서 검토 후 지급함

- 지체상금율은 기성고를 제외하고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로 함(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참조)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함

- 입찰의 무효

-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무효 및 부당업자로 제재

○ 비밀 유지

- 선정된 사업수행자는 계약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함
- 본 사업 관련 자료는, 진흥원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되며, 보안대책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사업수행자에 있음
- 사업수행자 및 그 직원과 당해 사업에 참여한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일체의 사항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으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함
-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은 진흥원의 요구에 따라야 함

○ 기타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 계약 상대방으로 선정된 경우 제안서는 계약 이행조건으로 함. 또한 진흥원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진흥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 자료는 제안서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입증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또한 계약 상대방 선정 이후라도 기재출한 제안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계약을 취소함
- 참가업체는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획득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한 정보를 대외에 누설하거나 본 용역 수행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업체가 관련 책임을 짐

6.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안내

○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제출 마감: 공고문에 의함

※ 제출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음. 또한 제출된 모든 문서는 심의평가 목적 외에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 평가회 실시 및 결과통보

- 제안서 평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서면 또는 발표평가로 실시

- 평가회 실시 및 결과통보: 제안업체 별도 통보

※ 제안서 설명: 제안업체 사업관리자(PM)이 직접 발표하고,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음)

· 발표(변동가능): 참가업체별 제안서 발표(발표 :20분, 질의응답 : 5분)

· 제안서평가: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활용하여 평가

○ 제출서류

- 제안서 및 발표자료 PDF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기타 입찰 공고서에서 제출 요구한 서류

7.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PDF 변환 후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제한을 두지 않으나 심사항목과 관계없는 자료 포함은 지양함 (단, 300mb 이내)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할 수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 ※ 제안업체는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 숙지하고 신청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업체에게 있음

8. 결과심의 및 제출

- 중간 및 최종 결과보고서 심의
 - 중간심의: 중간심의 1회 실시
 - 최종심의: 종합결과 발표 및 심의 실시
- 보고서 수량, 제출시기(관련 전산파일 포함) 등은 추후 공지
 - * 과업 수행 중 수집된 모든 관련 자료는 진흥원에 제출
- ※ 관련 문의처

- 제안서 제출 및 기술평가:

☎ 043-713-8433(산업통계팀 정주석 연구원)

[붙임1] 기술평가표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심 사 항 목	배 점
정량 평가 (14점)	업체평가 (10)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표8'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평가 실시	10
	사회적 책임 (4)	○ 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등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 사업주로 명단 공개 여부 (해당 시 0점)	2
		○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 공표 여부 (해당 시 0점)	2
정성 평가 (66점)	과업내용에 대한 이해도 (30)	○ 조사목적, 사업수행(제안) 내용의 타당성 및 충실성	15
		○ 데이터 처리·관리 및 분석의 전문성, 적절성	15
	수행능력 (30)	○ 조사 수행 능력(전문 조사원 보유 여부, 회수율 제고 방안 등)	10
		○ 보고서 작성계획의 전문성, 적절성	10
		○ 사업 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관련 자료 보유 여부	5
		○ 추진일정의 적정성 및 타당성, 사후 지원 계획 및 능력	5
	안전· 재난관리 등 비상대책 수립 (6점)	○ 안전·재난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전 직원 교육 계획 및 수강 · 위험성평가 실시 및 비상대응 훈련 실시 결과 · 안전 관련 관리감독자/담당자 지정 및 교육	3
		○ 비상대책의 적절성 · 비상상황 및 재난대응 운영계획의 현장 작동성 · 응급환자 대비 방안의 현실성 및 구체성	2
○ 협조체계 구축 · 보안·재난관리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적정성		1	
가격 (20)	○ 계약예규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20	
합 계			100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 시 추가 세부평가항목 사용가능

[붙임2] 정량평가 요소 세부기준

○ 경영상태 평가기준

경영상태 평가기준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평점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사회적 책임	①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②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붙임3] 참여인력 이력사항

인력 현황(년 월 기준)

구분	성명	연령	직위	기술등급	전공	사업참여 경력건수	경력기간

* 구분 란에는 책임자, 연구원, 보조원 등으로 구분 기재

[붙임4] 책임수행자 이력사항

책임수행자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전공	해당 분야 근무 경력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 임무	기술 등급	참여율	%	사업 참여 기간		
경 력 사 항						
사업명	사업 개요	참여 기간 (연/월~연/월)	담당 업무	발주처	비 고	

※ 작성 요령

- 경력, 자격증 등 이력서 첨부

[붙임5] 사업제안서

사업제안서				
사업명				
사업기간				
회사정보	회사명		대표자성명	
	기관주소	(우: -)		
	실무자성명		소속(부서)	
	직위		담당연락처	
<p>본인은 ○○○사업을 수행하고자 제안서를 제출하며, 본 사업의 수행이 결정될 경우 귀 원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p> <p>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에 의거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업관리 및 평가 등 관련 업무목적을 위해 사업자의 개인정보 등이 사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대표자 (인) </div>				

<제안서에 포함해야 할 기본사항>

1. 사업명

2. 사업목적

3. 사업내용 및 방법

4. 추진체계

5. 추진일정

6. 사업관련 역량 및 강점